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034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단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8. 11.

판 결 선 고 2015. 9. 8.

주 문

1.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3. 9. 5.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 14,184원, 지방교육세 2,8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3. 9. 4.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 7,142,944원, 지방교육세 1,428,58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자로 주식회사 [redacted]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대 2,55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탄약창 진입철도 인근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차용동 314 철도용지 40㎡ 및 위 차용동 405-17 철도용지 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면적을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고, 피고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9. 창원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시장은 2014. 1.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2014. 11.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7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원고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여러 차례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분양희망자를 찾지 못하여 분양에 실패한 이 사건 제1토지를 방치할 수 없어 소외 회사에 임대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분양공고를 낼 계획을 가지고 분양희망자를 물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그런데 이 사건 제2토지는 국방부가 탄약창 진입철도부지로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제2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제2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7. 21.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산업단지용 토지 등으로 조성한 후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분양희망자가 없었다.

나) 주식회사 [redacted]이하 [redacted]라고 한다)는 2004. 1. 12.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1,202.72㎡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008.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다) 원고는 2012. 11. 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제1토지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920만 원, 기간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의 2012년도 결산보고서 중 분양용대지 명세서에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완충녹지에 해당하는 412.5㎡를 재산세 과세면제대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면적 413.1㎡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이 사건 제1토지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적용배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1,652.4㎡(=413.1㎡×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85.1㎡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한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항 가목, 제45조의9, 제45조의13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형성한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을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하는 것(이하 '관리업무'라고 한다)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란 이러한 관리업무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임대한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려면 원고가 관리업무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소외 회사에 임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여섯 차례에 걸쳐 6년 동안 이 사건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토지를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에 실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redacted]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게 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하여 혼수용품을 파는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은 원고의 설립근거이자 산업집적법의 목적인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토지는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고시되어 있지 않고 용도별 구역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2012년도 결산보고서 중 분양용대지 명세서에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산업단지의 용지로서 매각하는 등 관리업무를 위해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면제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 산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4. 6.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창원공업기지 유통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였는데, 유통단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제2토지가 철도용지로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여 분양이 어려워지자 1998. 3. 20.부터 2010. 3.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제2토지 등의 매입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redacted]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등의 철도부지 편입 여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마친 후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원고 및 국방부(소관: 제9탄약창 5792부대)는 2008. 10. 10.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제2토지 인근에 있는 철도는 제9탄약창 진입철도로 이는 국방부 소관 재산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제9탄약창 진입철도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25.5㎡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였고, 나머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토지는 제9탄약창 진입철도로부터 불과 약 15 내지 18m 정도의 거리에 있고 위 진입철도와 사이에 경계를 지을만한 구조물 등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 포함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2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지는 위 진입철도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제9탄약창 진입철도에 편입된 토지로 위 진입철도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지방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2토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계약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 말하는 '계약서 등'은 증명방법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로만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창원시 의창구청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판사 박규도

판사 박지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⑥ 제5항 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5조의13(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9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조 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6

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④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